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정부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여 과중된 청소예산 부담을 경감하고,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인 봉투 판매소의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기존의 대형폐기물 납부 스티커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량제 봉투 품목 및 가격의 현실화 및 봉투 판매소의 이윤 상향 조정(안 별표5)
 - 리터당 30원으로 가격 일괄기준 적용 및 비사용 봉투 규격 삭제
 - 현행 평균 6.9%에서 9.4%로 인상
-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변경(안 별표3)
-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기재사항(배출자 성명, 연락처) 삭제(안 별표6)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신설
 - 당초 :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에 함께 명시(안 별표1)
 - 변경 :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수료를 분리하여 신설(안 별표8)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서식을 변경하고 비사용 봉투규격(3L, 30L) 삭제 및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1인가구 증가 및 배달음식 주문량 증가 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쓰레기배출량 감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시기인 것을 감안하여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의 시기적 적절성과 인상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